

檢 討 報 告

< 안 건 명 >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▶ 기획재정부 국 재무과 소관

日 時 : 2009. 10 . 19 (월) 10:00

行政建設委員會

專門委員 명 금 길

[검토보고]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동 개정조례안은 2009년 4월 27일 법률 제9174호로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과 2008년 5월19일 대통령령 제20772호로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이 일부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게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관리·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공유 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출된 것임

< 개정된 주요내용 >

- (1) 안 제4장 제목과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는 “행정재산 및 보존재산”이라는 용어를 “행정재산”으로 명칭을 단순화하여 통일
- (2) 안 제21조에서는 “잡종재산”이라는 용어를 “일반재산”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
- (3) 안 제25조제3항제3호에서는 그 동안 제외되었던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대부료 율을 2.5%로 적용함으로써 저소득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였고 같은 조 제4항제10호에서는 대형폐기물 등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2항에 의거 재활용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 경우 대부료 율을 1%로 인하 하는 규정을 신설
- (4) 안 제30조에서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34조의 개정에 따라 사용 대부료의 조정계수가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으로 확대
- (5) 안 제37조에서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42조제3항의 개정에 따라 공유 재산의 토지신탁 종류를 현행 “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”에서 “분양형 임대형, 혼합형 토지신탁으로 개정함으로써 혼합형을 추가
- (6) 그 밖에 전체적으로 현행 조례의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쉬운 우리말로 다듬어 일반 주민들이 읽기 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

[검토의견]

○ 동 개정조례안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신설하고 일부 변경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본 조례의 전 조문에 “잡종재산”이라는 명칭을 “일반재산”으로 변경하므로서 잡종재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고 주거용 건물의 경우에 있어 건축허가를 받은 적법건물과 무허가건물에 대한 요율을 차등하게 적용하던 것을 적법건물과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의 대부료의 요율기준을 동일하게 5%에서 2.5%로 적용함으로써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였으며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의거 재활용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 경우 대부료 율을 1%로 인하하여 대형폐기물 등의 재활용을 촉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유재산의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기준 완화에 따른 사용료 및 대부료 조정계수를 50%에서 70%로 확대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등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절차상으로도 입법예고 및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저촉됨이 없어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